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종식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9366
----------	-------

발의연월일 : 2026. 6. 19.

발 의 자 : 허종식 · 김태선 · 염태영
허성무 · 박 정 · 정일영
이훈기 · 이춘석 · 김정호
황 희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상청으로 하여금 해양기상, 항공기상, 수문기상에 대한 정보의 제공 또는 예보·특보를 통해 국민들이 해당 기상과 관련한 활동에 미리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음.

최근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발전이 증가하면서 해당 발전량에 영향을 미치는 기상현상으로서 재생에너지기상 역시 중요해지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재생에너지기상에 관한 규정이 없어 기상청이 재생에너지기상 정보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부족함.

이에 재생에너지기상의 정의와 재생에너지기상 정보 제공 근거를 신설하여 재생에너지 발전분야에서 기상청의 역할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2조제4호의5 및 제14조의4 신설).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4호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5. “재생에너지기상”이란 태양에너지, 풍력 등을 이용한 재생에너지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기상현상을 말한다.

제14조의4를 제14조의5로 하고, 제14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4(재생에너지기상 정보의 제공) ① 기상청장은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발전량의 예측, 재생에너지를 이용하는 발전 설비의 효율적 운영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재생에너지기상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생에너지기상 정보의 제공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